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증정, 기증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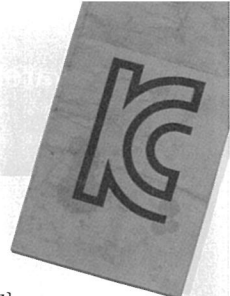
A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공산품의 모델별로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법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정, 기증 또는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도 해당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으로 상기 규정에 의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탈취제 제조, 판매에 관한 허가나 공장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탈취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탈취제를 제조·판매한다 하여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제조자별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장 출고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하여야 하며, 공장 등록 해당여부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영복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 해외 임가공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품질표시사항 중 제조자명에 수입업체명을 기재하는 것이 품질표시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A 수영복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안전·품질 표시 대상 공산품으로서 제조자명의 표시는 동제품의 제조(생산, 가공, 조립)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 졌다면 동제품을 제조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체명을 표시해야 하며, 동제품의 제조업자명에 수입업체명을 표시하는 것은 잘못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가족제품에 대한 규정이 36개월 영유아 제품까지 적용되나요?

A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제품이라도 원단이 표면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가족제품은 안전·품질 표시대상공산품인 가족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됩니다.

Q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아니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인 경우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확인기관에서 면제확인을 받으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수입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써 해당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3.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 위에서 1번은 업체관할 '시·도지사'에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외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T.02-890-8300)에서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Q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ower Supply Cord 규격에 대해 220V/250V 사용 기준으로 Cord 두께가 0.75mm가 국제 규격인지 또한 최소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전원코드규격은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기준(K60227-5)과 국제기준(IEC)과 동일하게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0.75mm², 절연체의 두께는 0.6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